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교육구의 다른 방침으로 인해,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UCP)는 BP 1312.3에서 명시한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와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준법 사무관

교육구는 불만제기에 대한 교육구 대응을 조정하고 주 및 연방 인권법 준수 책임자로서 아래에 명시된 개인(들), 직책(들), 부서(들)을 지명한다. 또한 지명된 개인(들), 직책(들), 부서(들)는 AR 5145.3에서 구체화한 준법 사무관으로서-불법적인 차별 (차별적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괴롭힘)에 관한 불만제기를 다룰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서 수령과 조사를 조정하며 교육구의 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부교육감 Kelly King 박사 - 교육 서비스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내선번호 1208
kking@gusd.net

Marine Avagyan 박사, 디렉터 - 공정, 접근성 및 가족 참여 부서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내선번호 1457
mavagyan@gusd.net

불만제기를 받은 준법 사무관은 제기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다른 준법 사무관을 배정할 수 있다. 제기된 불만에 다른 준법 사무관이 배정되었다면, 해당하는 경우 불만제기인과 피제기인(상대방)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제기된 불만과 관련하여 공정한 조사 및 해결에 방해가 되는 편견 또는 이해충돌이 있는 준법 사무관은 이 불만제기 케이스에 배정되서는 안 된다. 준법 사무관에 대한 불만 또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제기된 불만을 조사하는 준법 사무관의 능력에 우려가 제기된 불만은 제기된 불만을 조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배정된 직원이 훈련을 받고, 자신이 배정된 불만제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률과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같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훈련은 현재의 주 및 연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규정, 불법적인 차별(차별적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괴롭힘) 주장을 포함하여 불만 조사와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 제기된 불만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적용되는 표준 그리고 적절한 교정 조치가 다루어져야 한다. 배정된 직원은 교육감 또는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준법 사무관 또는 필요시 적절한 행정관은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준법 사무관 혹은 행정관은 한 가지 이상의 잠정적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감 대리인 또는 적절한 경우 학교 교장과 의논해야 한다. 준법 사무관이 잠정적인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할 때까지 또는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 중 어느 것이 먼저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안내문

교육구의 UCP 방침 및 행정 규정은 교원 휴게실, 학생회 회의실을 포함하여 교육구 내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교육법 234.1)

추가적으로, 교육감 혹은 대리인은 학생, 직원, 교육구 학생들의 학부모/보호자, 교육구 자문 위원회 위원, 학교 자문위원회 회원, 적절한 사립학교 임원 혹은 대표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교육구의 UCP 관련 서면 안내문을 매년 제공해야 한다. (5 CCR 4622)

안내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부한 교육위원회 정책, “UCP에 해당되는 불만제기” 섹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UCP에 저촉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그리고 모든 보호 그룹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연방 및 주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일차적 책임은 교육구에 있다는 언급.
2. 제기된 불만 처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직책, 알고 있는 경우 현재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의 신원, 그리고 그 사람이 조사하도록 배정된 사건에 대한 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언급.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3. UCP 불만제기는 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언급.
4.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케이스에서, UCP 불만 제기는 주장되는 행위가 발생한 날 또는 불만제기인이 주장되는 행위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언급.
5. 불만제기인이 제기된 불만을 보장하는 증거 혹은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 수수료 혹은 로컬 콘트롤 책무안 (LCAP)과 관련된 불만제기는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언급.
6.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교육과정 및 가외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기본 부분을 구성하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언급.
7.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및 불만제기 절차에서 구체화한 바와 같이, 교육구는 위탁 양육 가정 청소년, 노숙 학생, 현재 교육구에 재학 중이지만 이전에 청소년 법원 학교에 재학한 학생, 군인 가정 자녀, 이주 학생, 신입생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민자 학생의 교육 권리에 관한 표준 안내문을 게시한다는 언급.
8.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의거하여 불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불만제기인이 서면으로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서면 결정은 불만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질 것이라는 언급.
9. 교육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은 UCP 범위 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항소장을 불만제기서 원본 및 교육구 결정 사본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제출함으로써 교육구의 조사 보고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언급.
10. 가처분, 금지 명령이나 다른 구제책 또는 해당하는 경우 주 또는 연방 차별금지법에서 가용한 다른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구제조치를 불만제기인에게 알리는 언급.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UCP)

11. 교육구의 UCP 사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언급.

연례 안내문, 준법 사무관의 완전한 연락 정보 및 교육법 221.61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타이틀 IX와 관련된 정보들은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교육구가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영어가 미숙한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은 교육구의 UCP와 관련된 교육구 정책, 규정, 양식, 안내문으로 제공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교육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15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영어 이외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법 234.1 및 48985에 의거하여 교육구의 UCP 관련 정책, 규정, 양식, 안내문은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 교육구는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후견인을 위해 관련된 모든 UCP 정보에 대해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불만제기 접수

불만제기는 접수된 불만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준법 사무관에게 각각의 코드 번호와 소인 일자와 함께 불만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불만제기는 서면으로 불만제기인의 서명과 함께 접수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이유로 서면으로 불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불만에 대한 접수를 도와야 한다. (5 CCR 4600)

해당되는 경우, 불만제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1. 첨부한 교육위원회 정책 (“UCP에 해당하는 불만” 1항)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나 연방법 또는 규정을 교육구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떤 불만도 모든 개인, 공공 기관,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5 CCR 4630)
2. 학생 비용, 디파짓 및 LCAP과 관련된 부과금이나 요건에서 금지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불만은 불만제기인이 비준수 증거 또는 비준수 주장을 보장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 불법적인 학생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비용 부과 금지 위반에 대한 불만은 학교 교장 또는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제기할 수 있다

- 3. UCP 불만은 주장되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LCAP과 관련되어 제기된 불만에서 주장되는 위반 날짜는 카운티 교육감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LCAP을 승인한 날이다. (5 CCR 4630)
- 4.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은 불법적인 차별로 직접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불법적인 차별을 받은 사람이나 특정 계급, 또는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괴롭힘을 당한 개별 학생을 적법하게대변하는 대리인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또는 불만제기인이 주장되는 불법 차별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연장 사유를 기재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접수 시기를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CCR 4630)
- 5.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이 익명으로 접수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제공된 정보의 특수성과 신뢰성, 혐의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조사나 기타 다른 대응을 추구해야 한다.
- 6.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에서 불만제기인이 아닌 피해 주장인이 비밀을 요청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인 혹은 피해자에게 이 요청은 교육구가 제기된 불만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비밀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구는 불만을 조사하고 요청에 맞춰 그 불만을 해결/대응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중재

불만제기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중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당사자와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중재는 성인이 아닌 한 명 이상의 학생이 포함된 불만을 해결하도록 제안된다. 하지만 중재는 성폭행 혐의가 포함된 불만을 해결하거나, 한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해 제안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한 경우, 준법 사무관은 중재 과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보복 혹은 불법적인 차별 (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에 대한 중재를 시작하기 전, 준법 사무관은 모든 당사자가 중재인의 관련 기밀 정보 접근에 동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준법 사무관은 모든 당사자가 언제라도 비공식 절차를 끝낼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중재 과정이 법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불만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서면으로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 이용은 교육구의 불만 조사 및 해결 일정을 연장할 수 없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불만제기가 철회된 경우, 교육구는 중재를 통해 합의된 조치만 취해야 한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행정 규제에 명시된 후속 단계들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조사

준법 사무관이 불만제기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불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조사 시작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서에 기재된 정보를 준법 사무관에게 제시할 기회를 불만제기인 및/또는 불만제기인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불만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준법 사무관에게 제시할 기회를 불만제기인 및/또는 불만제기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증거 및 정보는 조사 중 언제라도 제시될 수 있다.

조사 수행 중, 준법 사무관은 이용 가능한 모든 서류들을 수집하고, 조사 과정 동안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추가적인 증거 혹은 정보를 포함하여 제기된 불만과 관련되어 가용한 모든 기록, 메모 또는 진술을 검토해야 한다. 준법 사무관은 제기된 불만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정보가 있는 모든 목격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해야 하며, 관련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적절한 간격으로 준법 사무관은 조사 진행 상황을 양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준법 사무관은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사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피해 주장인, 피의자 및 기타 관련 목격자를 면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직원 혹은 변호인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불만제기인이 제기된 불만 주장과 관련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교육구 조사관에게 제공하길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불만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유사하게, 상대방이 제기된 불만 혐의와 관련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교육구의 조사관에게 제공하길 거부한 경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부과하는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31)

법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불만제기서에서의 주장과 관련된 기록과 기타 정보에 조사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방해해선 안된다. 교육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한 해결책 부과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21)

조사 보고 일정

연장에 대한 불만제기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불만제기서가 교육구에 접수된 날로부터 역일로 60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조사 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불만제기서를 받은 후 역일로 30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아래의 “조사 보고서” 섹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불만제기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준법 사무관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불만제기인은 서면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제기된 불만과 관련된 답변을 해야 하는 60일 시간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차기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 또는 소집된 특별 위원회 모임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이 문제는 비공개 회의로 다뤄야 한다. 준법 사무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경우, 위원회는 불만제기인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위원회가 제기된 불만을 심리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교육구에 불만이 최초로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혹은 불만제기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 기간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위원회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 (5 CCR 4631)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의 경우, 상대방은 불만제기인과 합의한 일정 연장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을 전달받아야 하고 결론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불만제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 보고

모든 불만제기에 대해서,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5 CCR 4631)

1.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사실 판정.
2. 교육구의 관련 법률 준수 여부와 함께 각 주장에 대해 명료하게 결정한 결론.
3. 교육구에서 불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시정 조치(들)가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모든 영향을 받는 학생과 부모/후견인을 위한 교정 조치 그리고 학생 비용에 대해선 교육법 49013 및 5 CCR 4600을 준수하는 교정 조치가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4. 교육구가 5 CCR 4610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불만 사항을 다루기 위해 UCP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 조사 보고를 CDE에 항소할 수 있는 불만제기인의 권리에 대한 통지.

또한 조사 보고에는 재발이나 보복을 방지하고 차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보고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포함될 수 있다.

교육구 변호사와 협의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한, 조사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 관한 정보는 불만제기인이 아닌 피해자 그리고 조사 보고서 이행에 관여했거나 제기된 불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의 경우, 피해 주장인에게 보내는 교육구 조사 보고 통지문에는 피해 주장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대에게 가해지는 제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UCP)

제기된 불만에 영어가 미숙한 학생 혹은 학부모/보호자가 관련된 경우 그리고 그 학생이 15 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법 48985에 의하여 조사 보고서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 교육구는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후견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유의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주 법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차별 (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의 경우, 불만제기인에게 보내는 조사 보고에는 다음의 안내문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만제기인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 신청 후 역일로 60일 이내에 중재 센터 또는 공적/사적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불만제기 절차 이외 민법에 의한 법적 구제를 진행할 수 있다. (교육법 262.3)
2. 60일의 유예 기간은 주 법원에서 금지 명령의 구제 조치가 요구되는 불만제기 또는 연방법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불만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법 262.3)
3. 또한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 성별, 성 역할, 장애,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교육부 인권 사무소 www.ed.gov/ocr로 제기할 수 있다.

시정 조치

불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큰 규모로 학교나 교육구 차원에 초점을 둔 적절한 시정조치는 교육구 정책 보강; 교원, 교직원, 학생 훈련; 학교 정책 개정; 또는 학교 환경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복이나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 피해자에게는 제공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알리지 않는 적절한 구제 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상담
 2. 학업 지원
 3. 의료 서비스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행정 규정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4. 피해자가 교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호원 배치
5.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정보 및 유사한 사건 또는 보복 신고 방법
6. 분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 연루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분리
7. 회복적 정의
8. 그 행위가 중단되었고 보복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사

보복이나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 가해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적절한 시정 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실 변경 혹은 전학
2. 학부모/보호자 상담
3.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에 관한 교육
4. 긍정적 행동 지원
5. 학생 성공 지원팀에 의뢰하기
6.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외 활동 및 특혜 활동 참여 거부
7.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징계 조치

직원이 보복 혹은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저지른 것이 발견된 경우, 교육구는 적용되는 법과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해고가 포함되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또한 교육구는 불법적인 차별(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로 여겨지는 행동 유형들을 학생, 직원, 학부모/보호자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중재와 훈련을 제공하며, 더 넓게 교육구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으며 이를 보고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불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적절한 구제 조치를 불만제기인이나 달리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그러나 학생 비용, 예치금 및 기타 부과금, 체육 시간 분량, 교육 내용이 없는 교과과정, 지역 콘트롤 책무안(LCAP)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불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교육구는 주 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절차와 관련되어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1222, 51223, 52075)

학생 비용과 관련된 법령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의 경우, 교육구는 불만이 제기 되기 이전 일 년 범위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을 확인하여 부당하게 지불한 비용을 전액 배상하기 위해 성실히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 CCR 4600)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

UCP에 적용되는 특정한 연방 또는 주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불만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최종 서면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불만제기인은 교육구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역일로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CCR 4632)

1. 교육구는 불만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2.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되어 교육구 조사 보고에는 법적 결론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중요한 진상 판정이 결여되었다.
3. 교육구 조사 보고서에서 사실에 대한 중요한 진상 판정은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4. 교육구 조사 보고서에서의 법적 결론은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5. 시정 조치들에 적절한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교육구의 비준수가 발견된 경우

교육구의 조사 보고에 대한 항소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즉시,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5 CCR 4633)

1. 불만제기서 원본 사본
2.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 사본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행정 규정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3.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조사원이 수집한 모든 메모, 면담, 서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 사본
4. 제기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보고서
5.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사본
6.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요청한 기타 관련 정보

캘리포니아 교육부로부터 불만제기서에서 제기한 주장을 교육구 조사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교육구는 통보를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항소인에게 원래 조사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장을 다룬 개정된 조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보고서에는 원래 조사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장에 관해 수정된 보고를 별도로 항소할 권리를 항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5 CCR 4632)

라이선스가 면제된 유아원 프로그램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불만제기

라이선스를 면제받은 캘리포니아주 어린이집 프로그램(CSPP) 보건 및 안전 이슈에 관해 제기된 불만제기는 5 CCR 4690-4694에서 설명된 절차들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

라이선스를 면제받은 CSPP 각 학급의 경우, 보건 안전법 1596.7925에 따라 CSPP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타이틀 5 규정의 보건 및 안전 요건 그리고 이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불만제기 서식을 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학부모/후견인, 학생 및 교사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법 8235.5; 5 CCR 4690)

5 CCR 4622에 의거하여 배포되는 교육구의 연례 UCP 안내문에는 이 CSPP 프로그램은 라이선스가 면제되어 운영되며 CSPP 프로그램은 규정법 타이틀 22 하의 요건에 의거하여 운영된다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5 CCR 4691)

라이선스를 면제받은 CSPP 프로그램에서 구체화된 건강 및 안전 이슈와 관련된 불만은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 또는 대리인에게 제기해야 하며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 불만제기 서식에는 불만을 제기한 장소를 명시하고, 불만제기인이 불만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기된 불만이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의 권한을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 (교육법 8235.5; 5 CCR 4690)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UCP)

라이센스를 면제받은 CSPP 프로그램에서 건강 및 안전 이슈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조사는 불만 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교육법 8235.5; CCR 4692)

유아원 행정관 또는 대리인은 불만 제기일로부터 근무일 30일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유효한 불만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제기된 불만에 대한 답변을 받길 원한다고 명시한 경우, 유아원 행정관 혹은 교육감 대리인은 최초로 불만이 제기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45일 이내에 불만제기인과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배정한 현장 상담인에게 제기된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보고해야 한다. 유아원 행정관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 정보를 교육감 혹은 대리인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법 8235.5; CCR 4692)

제기된 불만에 대한 해결책에 불만제기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불만제기인은 예정된 정기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제기된 불만에 대해 설명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서면 보고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구 결정을 5 CCR 4632에 의거하여 공립교육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다. (교육법 8235.5; 5 CCR 4693, 4694)

분기별로 교육감 및 대리인은 예정된 정기 교육위원회 모임과 카운티 교육감에게 해결된 불만과 해결되지 않은 불만 숫자와 함께 일반적인 문제 분야 별로 제기된 불만 숫자를 포함하여 모든 CSPP 건강 및 안전 불만제기 성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요약한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5 CCR 4632)

규정 승인일: 08/1985

규정 개정일: 07/16/1991; 11/03/1992; 10/07/1997; 12/17/2002; 06/27/2006;
11/16/2007; 08/24/2010; 10/24/2011; 01/30/2014; 05/06/2014; 11/18/
2016; 09/01/2017; 02/06/2018; 05/21/2018; 06/07/2019; 07/17/2020;
03/12/2021

(이전의 AR 1312)